

#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(광양소방서 신축) 축조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

의안 번호	4389
----------	------

2025.12.4.  
산업건설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·제출자: 2025. 11. 10.(월) 광양시장

나. 회부일: 2025. 11. 10.(월)

다. 상정일: 2025. 12. 4.(목)

-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“원안가결”

## 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취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광양시유지에 영구시설물(광양소방서 신축)이 축조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소방 인력 및 장비(중형소방차, 구급차 등) 확충
-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을 통한 안전교육 기반 강화
-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를 통한 시민 생명·재산 보호

### 3. 검토 결과

- 본 안건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광양시 소유의 시유지(광양시 마동 1854, 10,613m<sup>2</sup>) 위에 영구시설물인 광양소방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
- 광양소방서 신축은 노후 청사의 안전성 문제 해소, 신속한 출동 체계 확립, 시민안전 체험 기능 강화 등 공익성이 인정되며 부지 사용은 시유지 내에 계획되어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도비를 주재원으로 하는 청사 건축구조 또한 법령에 근거한 절차로서 타당하다 사료되며
- 다만, 향후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,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

### 5. 심사 결과: 원안의결(출석위원 7명)

### 6. 기타 사항

- 해당 없음.

붙임: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(광양소방서 신축) 축조 동의안

#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(광양소방서 신축)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438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11.10.

제출자 : 광양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광양시유지에 영구시설물(광양소방서 신축)이 축조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광양소방서 노후청사로 제11차 전남소방력 보강 5개년\* 사업계획에 따라 광양소방서 신축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\* 5개년: '23. ~ '27.
- 인력과 장비(중형소방차 및 구급차) 확충, 시민안전체험관 구축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  - 위치/면적 : 광양시 마동 1854 / 10,613㎡
  - 건축 규모 : 지상 4층(본관동 4,000㎡, 별동 2,000㎡)
- 現 소방 청사 현황 : 소방서 + 중마안전센터

위치	급지	건립연도	면적(㎡)		용도 지역	공시지가	감정평가액 ('24년)
			대지	건물			
중동 1312-2	1급	1990년 (34년)	2,633 (798평)	2,525 (765평)	제2종 일반주거	761천원	7,372,680천원 ('24.6.18.감정)

※ 현소방서 소유자(토지+건물) : 광양시

## 3. 세부사업계획 : 별첨

#### 4. 관계법령

- 「소방법」 제2조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3조(소방기관의 설치),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기준」 5조(설치 등)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, 24조(사용료의 감면)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호 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

#### 5. 사전절차 이행 : 해당 없음

#### 6. 지금까지 추진실적

- 부지 후보지(안) 검토 : ' 25. 7. 11.
  - 관련부서 협의(산단택지과 / 지구단위변경 추진 등)
- 광양소방서 부지(안) 소방서와 협의 : ' 25. 7. 14.
  - 제공 부지(안)에 적정 의견서 광양소방서 공문 회신 - 붙임 3
- 광양시의회 간담회 사전 설명 : ' 25. 8. 1.